

海岸保全區域의 維持管理

해안보전 구역이란

(1) 어떤 경우에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는가

해안보전구역이란 해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즉 적극적으로 해안보전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소극적으로는 해안보전상 유해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이 해안보전구역으로 지정된다.

① 해안보전시설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이 있는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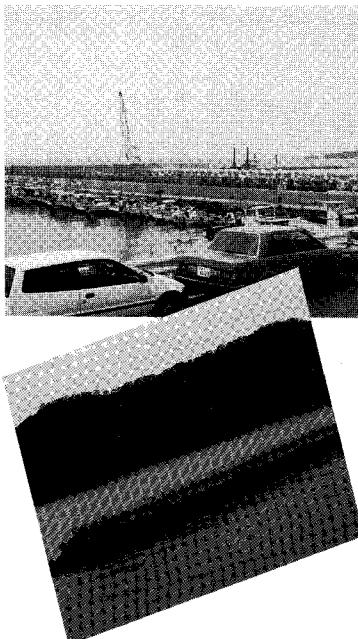
②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구역

③ 장래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예상되는 구역

④ 전 각 항에 게기한 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해안보전상 특히 행위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2) 해안 보전구역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해안보전구역은 해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도의 구역에 멈추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원칙적으로 육지에 있어서는 춘분일의 만조시의 수제선(水際線)으로부터, 수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간조시의 수제선으로부터 각각 50m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지형, 지질, 조위, 조류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0m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해안법 제3조제3항)

① 해안보전시설이 수제선으로부터 50m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설치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② 침식이 심하여 해안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어디인가

다음에 게기하는 구역은 해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해안법 제3조제1항)

① 하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하천(1급 및 2급 하천)의 하천구역

② 사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

③ 삼림법(森林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혹은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시설구역(단, 도도부현지사는 해안의 보전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에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해안법 제3조제2항))

④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고 또는 관리하는 비행장의 구역 및 철도용지(지방철도법 제15조 각호의 토지)와 궤도용지(궤도법 제26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철도법 제15조 각호의 토지)

⑤ 인공박지 등의 구역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4)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① 제방이나 호안등의 해수의 침입이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해안보전시설)의 신설, 개량 등의 선행적인 사업은 그 비용의 일부가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실시됨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부담을 받는다.

② 토석의 채취, 토지의 굴착, 해안보전시설 이외의 시설

에 의한 점용등 해안보전상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배제할 수 있다.

(5) 지정의 표시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해안보전구역의 표시는 원칙으로 기점, 보조점으로부터의 방위와 거리에 의하여 표시되나 기점, 보조점의 표시에 즈음해서 해안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정의 지물(地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일부에 기점들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구성, 고정성이 있는 지물 등을 택하고 지번에 기점을 구하지 않으면 않을 때에는 지번의 각을 채용(採用)하도록 되어 있다.

(6) 지정의 수속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는 지정의 목적에 걸맞게, 지정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를 결정, 마침 그때 그 예정구역내에 타성·청소관의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담당부국과 사전조정을 충분히 함과 동시에 어항구역과 중복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또 항만법에 근거한 항만구역, 항만인접지역 또는 공고수역(公告水域)과 중복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각각 항만관리자, 항만관리자의 장, 또는 공고수역을 관리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해안보전구역이란

해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즉 적극적으로

해안 보전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소극적으로는

해안보전상 유해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이

해안보전구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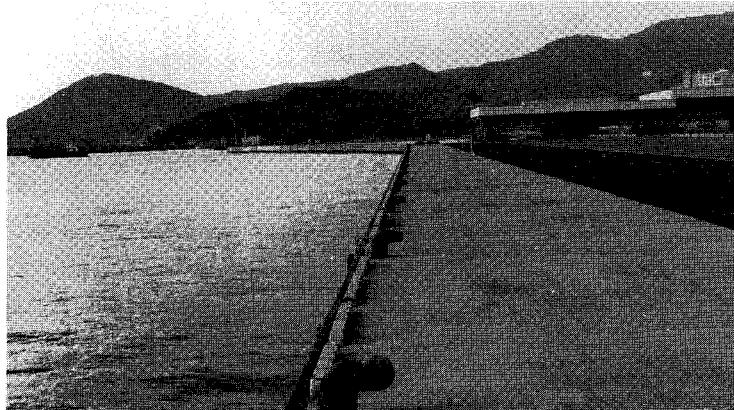
지정된다.

이들의 협의 종료후, 지사는 해안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하는 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구역을 명시하여 도도부현의 공보에 게재하고(농림수산대신에 협의할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동 대신의 회답일로부터 45일 이내)공시함과 동시에 해안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공시를 게재한 공보를 첨부하여 주무대신(어항구역에 관계되는 것은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더우기 이 공시는 지정 또는 폐지의 효력 발생요건이 되고 있다.(법 제3조제5항)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협의의 수속에 대하여는 「어항구역에 관계되는 해안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수산청장관 통첩)에 의하나 그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전기통첩의 별지 양식1의 협의서에 구역조사(동 양식2), 지정사유서(동 양식3), 어항관리자 의견서(동 양식4), 평면도(동 양식5) 및 사진을 첨부하여 행하도록 되어있다. 더우기 이 협의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어항의 구역에 접하는 해안보전구역(해안법 제5조제4항)에 대하여는 당해 어항의 어항관리자의 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사전에 당해 어항관리자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회답서를 협의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② 협의서에 첨부할 지정사



유서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지관리상의 이유에 의할 경우에는 그 뜻을 도면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 협의서에 첨부하는 평면도의 작성에 즈음해서는 다음에 유의할 것.

○ 해안보전시설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평면도에 기입한다.

○ 해안보전구역을 표시할 거리, 방향에 대하여는 연장, 도수(度數)를 실측치와 어긋남이 없도록 기입한다. 더욱이 해안보전구역을 방향과 거리를 가지고 표시할 경우에는 각 점마다 정북선(즉 방위에 의함)을 도시한다.

○ 타 성 소관의 해안보전구역 및 해안보전시설과 어항구역에 관계되는 해안보전구역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접속의 관계를 도시한다.

○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을 정확히 기입한다.

○ 평면도에는 반드시 등심

선 및 등고선을 기입한다.

④ 어항의 구역에 관계되는 해안보전구역의 경계에는 될 수 있는 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7) 폐지의 수속

해안보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산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해안보전구역의 폐지의 수속은 상기의 협의 종류후 지정의 경우와 같이 해안법시행규칙 제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함과 동시에 그 뜻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우기 해안보전구역에 대하여는 어항구역과 같이 구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정구역 중 축소하는 부분을 폐지하고 확장하는 부분을 지정하든가 일단 전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전부를 지정하여 바로 접든가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❸